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3. 20.

총무건설위원회

1. 신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 2 차 위원회 ('99. 3.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김진택

가.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규정 관련, 별표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의 세율을 적용도록 하고,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의 단일세율을 적용도록 완화하며, 마포구 관할구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준일부터 7년동안은 전액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퍼센트 경감(공제)하는 규정을 각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씨씨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의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 (12,000원)으로 부과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의 2).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마포구 관할구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공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년12월30일과 '99년1월11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임.
- 안 제11조의 2에는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관련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서 정한 4종(18,000원), 5종(12,000원)에 불구하고 5종으로 과세하도록 신설하였음.
- 안 제13조의 2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된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음.
- 안 제13조의 3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신설하는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의 2의 면허세 감면 규정은 부칙에 '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3.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규정 관련, 별표의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의 단일세율을 적용토록 완화하며, 마포구 관할구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준일부터 7년동안은 전액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퍼센트 경감(공제)하는 규정을 각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경형자동차(배기량 800씨씨 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것)의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12,000원)으로 부과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신설(안 제13조의2)
- 다. 마포구 관할구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

어,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공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의3).

3. 개정근거 :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제7조 및 제9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첨 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마포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경형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한다.
(신 설)	제13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신 설)	제13조의3(마포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공제)

현 행	개 정 안
	<p>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공제)한다.</p> <p>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p>제1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p> <p>제2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 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p>